

「충남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 [천안·공주·아산·청양 지역]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

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9월 13일

(재)충남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

① **사업목적** : 충남지역 자동차 업종의 원·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고, 자동차부품 제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

② **지원대상** :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충남 컨소시엄(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청양군) 소재 기업 및 재직근로자

1. 사업대상 : 컨소시엄 지역에 소재한 5~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자동차부품제조업 (C30) 및 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·기아차) 부품협력사(산업분류코드 무관)

-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, 현대·기아차 협력사 증빙서류(SQ인증서 등)
-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, 지점 소재지 등 포함

2. 기업규모 :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

- 신청근로자가 여럿일 경우, 정규직 채용일(또는 전환일)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 채용일(또는 전환일)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

3. 지원대상 및 채용조건

[일자리 채용 지원금] 신규 취업한 근로자 대상 지원금으로 근로자(개인)에게 지원금 지급

[기업 도약 장려금] 신규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으로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

(일자리 채용) 20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, 신규 취업한 자
-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를 '24. 4. 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신청 가능 (※ 전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
(기업 도약) 20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

4. 소재지 조건 : 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청양군 소재 기업 및 재직근로자
- 사업기간 동안 컨소시엄 시군 거주 필수
(예, 천안 소재 기업 - 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청양군 거주자 : 참여 가능)
(예, 천안 소재 기업 - 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청양군 외 충남도 거주자 : 참여 불가능)
 - 해당 시군 외 타 시군 거주 근로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전입 후 참여 가능
5. 나이 조건
- (일자리 채용)** 만 15세 이상(취업일 기준)
- (기업 도약)**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(채용일 기준)
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
(예,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~59세 이하)
6. 근로 및 재직조건 : 고용보험가입자,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
- (일자리 채용)**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 자,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
- (기업 도약)**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% 이상,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
- 주 40시간 기준 공제전 월 2,472,888원 이상
 - 기본급, 기타 수당(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, 초과근무수당 제외)

② 지원 제외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

(일자리 채용)

-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*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
* 예)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등
- 다만, 기존 고용센터의 ‘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’ 대상이 된 자(15 ~ 34세, 6개월 근속)도 신청할 수 있으며, 3, 6개월 근속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고, 12개월 근속 지원금은 본 사업에서 지원)
- ②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신청일 기준)
- 다만,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
- ③ 근로자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 등) 관계에 있는 자
- ⑤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
- ⑥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
-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
- ⑧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)
-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
- 방통대 · 사이버대 · 학점은행제 · 야간대학 · 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

- 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
 - 다만, 사업장 폐업 또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가 타 선정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참여자 재선정 및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(이 경우 실제 취업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)
- ⑩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
- ⑪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

(기업 도약)

○ 제외 근로자 기준

- ①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
 - * 예) 고용창출장려금, (지역)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
 - 특히, 기존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대상이 중복되므로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
- ②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- 다만,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
-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
- 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 등) 관계에 있는 자
- ⑤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)
 -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
 - 방통대·사이버대·학점은행제·야간대학·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
- ⑥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

○ 제외 기업 기준

- ① 국가 및 지자체와 그 출자·출연기관, 공공기관 등
- ② 근로자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및 소비·향락업 등의 업종 기업
- ③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한 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기업
- ④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재택근무자로 채용한 기업
- ⑤ 감원방지기간(채용 후 12개월)에 인위적인 감원한 기업
 - 감원방지기간에 지원 대상자를 경영상 해고, 고용조정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에는 감원 발생 다음 날부터 동 사업* 지원은 일할계산 없이 모두 중단
 - * 대상 사업: 일자리 채용 지원금, 일자리도약장려금, 복리후생비 지원
 - 지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해당자에 대한 지원만 중단
- ⑥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(사업주)

③ 사업 수행기간 : 2024.04.25. ~ 2024.12.31.

④ 지원내용

- 1. 참여기업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채용기업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
- 2. 참여기업 재직자 복리후생비 지원
- 3.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등

II. 지원내용 및 절차

* 지원 내용

구분	세부 내용	지원금	인원
일자리 채용	3개월, 6개월, 12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	최대 300만원 (3회×100만원)	108명
기업 도약	매월(月) 고용유지시 각 100만원 지원 - 채용 후 3개월까지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임 - 3개월 고용유지 미충족시 지원 불가	최대 1,200만원 (12회×100만원)	54명
복리후생비	참여기업 재직근로자 1인 1회 20만원 지원	1인×1회×20만원	615명
공통 참여	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사업참여 기업탐방 등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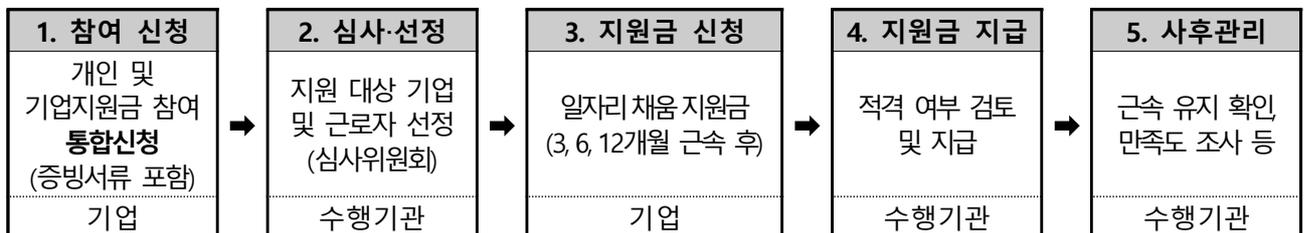
※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, 컨소시엄별 지원 인원 상이

① 일자리 채용 지원금 : 총 108명

- 1. 지원내용 - 참여기업 신규 취업근로자 인건비 지원금
 - 지원규모: 기업별 10명 한도
 - 지원기간: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지원
 - 지원수준: 정규직 취업 후 3, 6, 12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 (일할계산 없이 총 3회 지급)
 - ※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2. 지원절차

【 사업추진 프로세스 】



※ 최초 기업/근로자 선정 후(1~2), 사업운영 반복(3~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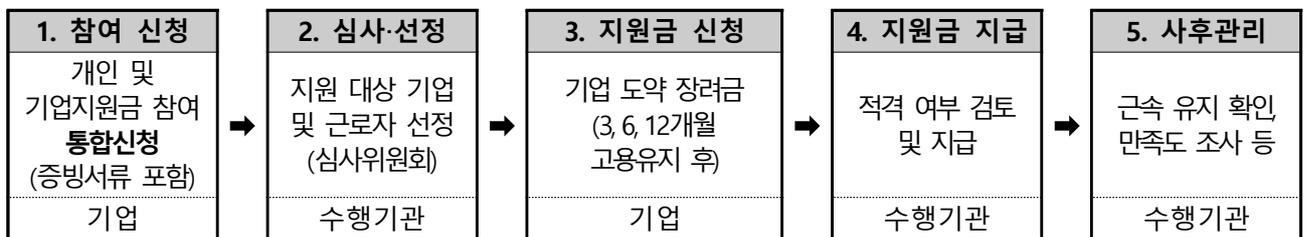
- 3. 기타 : 참여기업/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② 기업 도약 장려금 : 총 54명

1. 지원내용 - 참여기업 신규 채용근로자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
 - 지원규모: 기업별 5명 한도
 - 지원기간: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대 1년간 지원
 - 지원수준: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기간 1개월당 100만원씩 1인당 최대 1,200만원 지급(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)
 - 최초 고용유지 기간은 3개월로, 고용유지 미 충족시 지원 불가
- ※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2. 지원절차

【 사업추진 프로세스 】



※ 최초 기업/근로자 선정 후(1~2), 사업운영 반복(3~5)

3. 기타 : 참여기업/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③ 복리후생비 : 총 615명

1. 지원내용
 - 지원내용: 참여기업 재직근로자 복리후생비(건강검진비, 출산지원금, 복지비) 지원
 - 일자리 채움 지원금 수혜자 제외
 - 지원규모: (천안, 아산) 기업별 5명 한도
(공주, 청양) 기업별 한도 없음 -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
 - 지원기간: 사업 선정 후 ~ 12.31까지
 - 지원수준: 1인 1회 20만원 내 실비(건강검진비, 출산지원금) 또는 정액(복지비) 지원
2. 기타 : 일자리 채움 지원금 지원사업 및 기업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복리후생비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④ 공통 :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

1.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
 - 일자리 채움 장려금 수혜자는 본 사업에서 교육 개설 및 간담회 운영 시 참석 必
2. 기업탐방 운영
 - 기업정보 공유 및 지역인재 발굴, 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탐방 운영 시 기업 협조

Ⅲ. 사업 신청 및 선정방법

① 사업 신청

[천안시, 아산시]

1. (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)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요건 만족 시 참여 신청서(서식1-1~서식8)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 - 지원인력 신청 인원은 기업별 15명까지 가능
 - 일자리 채용 지원금 : 신규채용 인원 10명까지 가능
 - 기업 도약 장려금 : 신규채용 인원 5명까지 가능
 -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 통합 신청
2. 복리후생비는 사업 참여기업(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) 선정(확정) 후 지원

[공주시, 청양군]

- 1-1. (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) - 대상자 있을 시
 - :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요건 만족 시 참여 신청서(서식1-2~서식8)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 - 지원인력 신청 인원은 기업별 15명까지 가능
 - 일자리 채용 지원금 : 신규채용 인원 10명까지 가능
 - 기업 도약 장려금 : 신규채용 인원 5명까지 가능
 -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 통합 신청
- 1-2. (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) - 대상자 없을 시
 - :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요건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시, 사업참여 신청서(서식1-2) 및 증빙서류 제출
2. 복리후생비는 사업 참여기업(일자리 채용 지원금, 기업 도약 장려금) 선정(확정) 또는 본 지원사업 대상 기업임이 확정(적격심사 등) 된 후 지원

② 참여기업(근로자) 선정

1.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
 -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
 - 필요에 따라 발표, 인터뷰 등 진행할 수 있음
 - 심사 기준(안) : 재정건전성(기업 신용등급 등), 고용유지 가능성(계속 고용 의지 등), 50인 이하 사업장 가점 부여 등
2. 채용 인력(수혜근로자) 중복 검토를 통한 최종 선정
 - 선정기업 근로자 대상 중복지원 검토 등 외부기관 연계한 최종 지원 대상 확정

IV. 접수방법 및 기타사항

①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

1. 공고기간
 - 2024. 9. 13.(금) ~ 2024. 9. 30.(월)
 - 접수 마감일 : 2024. 9. 30.(월) 18:00까지
2. 제출서류 : 참여 신청서(양식) 외 증빙서류 1부 *하단 신청서류 목록 참조
3. 접수방법 : 우편(또는 방문 접수) 후 메일 발송
 - 봉투 겉면에 ‘충남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’ 표기
 - 제출서류 스캔파일(모든 서류 일체 PDF 파일로 변환) 메일 발송
 - 접수 메일 : young@ctp.or.kr
 - 메일 제목에 ‘기업명 -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서’ 표기
 - 접수 마감시간(18:00) 이후 접수는 받지 않으며,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함
 -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
4. 제출처 및 문의처 : (31035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
충남테크노파크 벤처관(8관) 3204호
산업인력개발센터 정근영 대리(☎041-589-0672)

[사업참여 신청양식]

번호	서식명	추가 서류	비고
서식 1-1 서식 1-2	사업참여 신청서(천안,아산) 사업참여 신청서(공주,청양)	첨부서류 5종	
서식 2	(개인) 일자리 채용 지원금 참여 신청서	첨부서류 3종	일자리 채용 지원금 대상자 있을 경우 신청
서식 3	(개인)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		
서식 4	(개인)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		
서식 6	(기업) 기업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서	첨부서류 4종	기업 도약 장려금 대상자 있을 경우 신청
서식 7	(기업)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		
서식 8	(기업) 참여 자격 확인 및 동의서		

※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② 지원신청시 유의사항

1.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,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추후라도 적발시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
 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2. 정부지원사업비 부당 유용, 환수 등의 이력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적발 시, 사업 선정 후 지원 중에도 지원 제외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
3.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, 네트워킹(간담회, 기업탐방 등)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4.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수혜 근로자는 신청 불가(향후 본 사업 수혜기간 동안은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불가) ※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성 검토 실시 예정
5.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 신청 취소, 지원 성과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향후 충남테크노파크 유사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반영함

- ※ 붙임: 1. 사업참여 신청 서식-8종
2.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- C30